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72

2023년 12월 19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고광민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고광민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정책 유효성 검증 요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폐지 대상 정책 등의 심의 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Ⅲ.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10월 16일 고광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372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총량제 3.0계획(2022~2024)」에 따라 매년 정책·사업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정책·사업을 관리사업(정비 대상 사업)과 제외사업(필수 사업이나 교육청 유지 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폐지’, ‘개선(통합,보완,축소 등)’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정책·사업은 매년 정책에 대한 정책

사업평가단의 검토를 거친 뒤 정책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정비안을 확정하고, 이후 정비안에 대한 정책정비실무단의 검토의견을 각과에서 재검토한 후 최종 정비안을 정책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차년도 예산에 결과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정책·사업에 대한 정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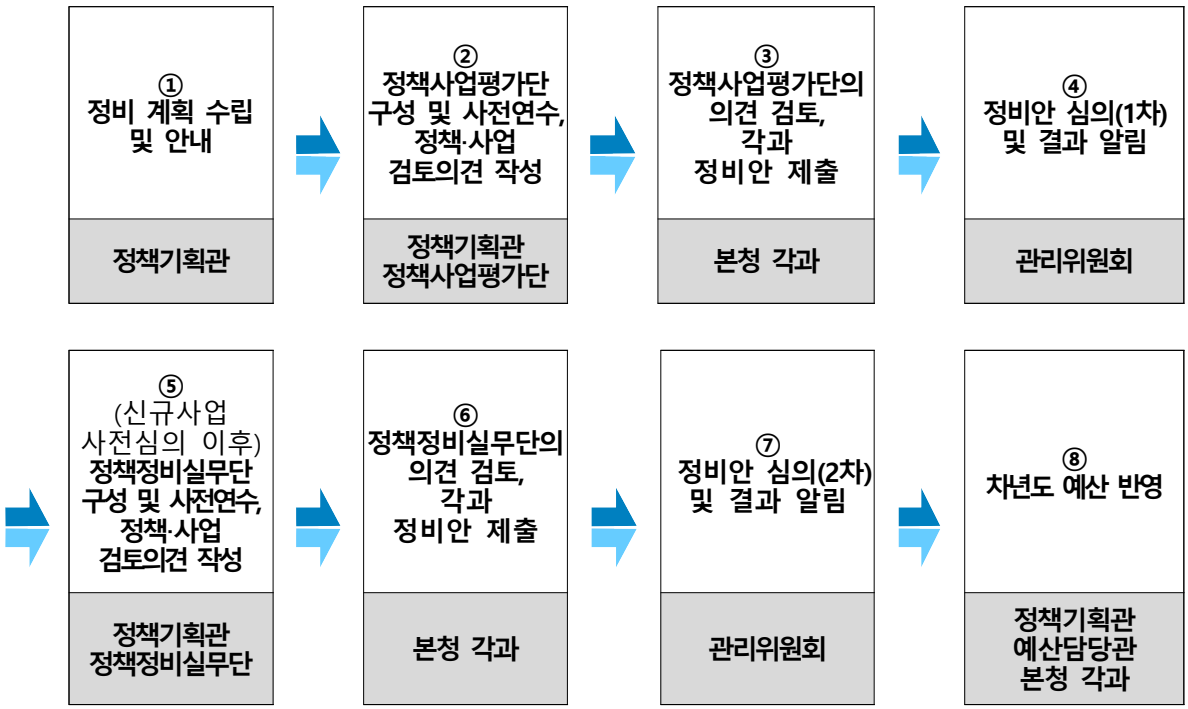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대한 관리는 각 부서가 목적사업별 성격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서 사업부서의 추진사업의 정비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고 실제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교육감의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사업이 정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정책·사업에 대한 검증 제도의 실제적 운영을 위한 절차, 검증 기준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있습니다.**

○ **그리고 안 제4조는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절차와 효과를, 안 제5조는 정책 폐지의 권고 사항을, 안 제6조는 유효성 검증에 대한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10조까지는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사항을, 안 제11조는 교육감의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실체적 내용에 따라 적절히 순서를 정하고 관련 지침[1] 등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바, 형식적 측면에서 구성 체계상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책 유효성 검증 등에 대한 의견(안 제4조~안 제6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정책 유효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재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5조는 의회가 폐지 대상 정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교**

1)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육위원회의 의결(안 제2항)을 거쳐 교육감에게 정책 폐지를 권고할 수 있고(안 제1항), 이에 대해 교육감은 권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안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교육감 및 의회의 정책 폐지를 위한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기준은 안 제6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교육감과 의회가 각기 다른 절차를 통해 교육청 정책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한 후, 유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폐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정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집행부의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있어 역할에 따른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의 경우 3년의 검증 제한기간은 사업의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는 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의견(안 제7조~안 제10조)

○ 안 제7조는 교육감 및 의회에서 폐지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안 제1항 및 제2항)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안 제3항)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만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항)하고 잔여임기(안 제2항)와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회의 개최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적 규정은 교육감과 의회의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른 정책 폐지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 폐지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자의적인 정책 폐지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부칙에 대한 의견

○ 동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책 유효성 검증을 위한 대상과 절차 및 세부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5379.,2023.10.27.)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

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교육감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감은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도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등) 교육감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